

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명

이병윤 의원

안녕하십니까? 이병윤 의원입니다.

존경하는 우리 교통위원회 선배·동료의원들 앞에서 “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.

본 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자전거도로 상에 통행에 방해되는 물건 등이 방지되지 않도록 시장의 책무를 조례에 명시하고 조례의 적용범위를 타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 조례를 적용토록 하는 것입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, 동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